

축산물등급거래규정 개정 요지

■ 개정사유

- 축산법(법률 제5720호, 99.1.29) 및 축산법시행규칙(농림부령 제1345호, 99.9.7)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고시내용 중 축산법시행규칙에 반영된 사항을 삭제하고 그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개정요지

- 등급판정제의 대상축산물에 대한 확인 등 처리절차를 새로이 정함
- 학술연구용은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바베큐용·제수용은 도축검사신청서를 확인토록 함
- 등급판정전에 절취하는 부위는 쇠고기 부위별 분할 및 정형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판정사 입회하에 도축장관계자가 절취하도록 함
- 신규 등급판정사 배치는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관에게 요청하던 것을 등급판정소장이 판단하여 배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종전의 고시(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내용 중 축산법시행규칙에 반영된 사항을 삭제함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 시·도지사의 등급판정업무 지도·단속 등 행정조치사항
- 2000.1.1부터 시행기로 한 경기·경남지역의 44개시·군(경기 27, 경남 17)의 돼지도체 등급거래지역은 등급판정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등급거래지역에서 제외

농림부고시 제1999-65호

축산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9월 28일

농림부장관

축산물등급거래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

육을 말한다.

제3조(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 및 종류·형태 등)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 ① 축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 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등급판정시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비큐용 또는 계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의한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절취한다.

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 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 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

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

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포함한다.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을 가공·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소의 종별,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빙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물등급판정사 배치) ①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등급판정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1999-41호(99.7.7)에 의한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등급거래지역 시·군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소의도체	돼지도체
서울특별시	전지역	95. 2. 6	95. 2. 6
부산광역시	전지역	95. 6. 1	95. 2. 6
대구광역시	전지역	95. 10. 1	95. 6. 1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전지역	95. 10. 1	95. 6. 1
광주광역시	전지역	95. 10. 1	95. 6. 1
대전광역시	전지역	95. 10. 1	95. 6. 1
울산광역시	전지역	97. 7. 15	97. 10. 1
경기도 (31개시군)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주군, 포천군, 연천군, 화성군	96. 7. 1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96. 7. 1	99. 1. 1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오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양주군, 여주군, 양평군	98. 7. 1	-
	부천시	98. 7. 1	99. 1. 1
강원도 (18개시군)	원주시, 횡성군, 철원군	96. 7. 1	-
	춘천시	96. 7. 1	99. 1. 1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99. 7. 1	-
	홍천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99. 10. 1	-
	태백시,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00. 1. 1	-
충청북도 (11개시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청원군, 옥천군, 괴산군	96. 7. 1	-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98. 7. 1	-
	청주시	96. 7. 1	99. 1. 1
충청남도 (15개시군)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96. 7. 1	-
	보령시, 금산군, 당진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	98. 7. 1	-

축산물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등급거래지역 시·군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소의도체	돼지도체
전라북도 (14개시군)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96. 7. 1	-
	전주시	96. 7. 1	99. 1. 1
	정읍시	98. 7. 1	-
	부안군	97. 8. 1	-
	고창군	99. 1. 1	-
전라남도 (21개시군)	나주시, 여수시, 장흥군, 보성군, 함평군, 확순군, 강진군, 장성군, 해남군	96. 7. 1	-
	목포시	97. 1. 30	-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98. 7. 1	-
	완도군(완도읍·군외면 이외의 도서지역 제외)	-	-
경상북도 (21개시군)	안동시, 김천시, 영천시, 영주시, 경산시, 문경시, 고령군	96. 7. 1	-
	예천군	98. 7. 1	-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99. 1. 1	-
	경주시, 영덕군	99. 7. 1	-
	포항시	99. 7. 1	99. 7. 1
경상남도 (20개시군)	진주시, 양산시, 진해시, 창녕군, 고성군	96. 7. 1	-
	김해시	96. 7. 1	95. 6. 1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99. 1. 1	-
	마산시	96. 7. 1	99. 1. 1
	합양군	98. 7. 1	-
	창원시	99. 1. 1	99. 1. 1
제주도 (4개시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95. 2. 6	95. 2. 6